

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4. 5. 13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4. 5. 14

다. 상정일자 : 제33회 사하구의회(임사회)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('94. 5. 24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도시개발과장 안명만)

가. 제안이유

부산직할시 사하구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의 회계관리 공무원을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사업시행 주관부서와 일원화 시키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징수관을 총무국장에서 도시국장으로 분임징수관을 세무과장에서 도시개발과장으로 변경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함에 있어 사업시행 주무부서로 징수관 및 분임징수관을 일원화시켜 특정 세입·세출을 관리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법률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(일문일답식으로 진행)

○ 질의(장창조 위원)

특별회계 재원만이라도 구 금고를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으로 대체할 용의는?

○ 답변(도시개발과장)

도시개발과장으로서 어떠한 방안을 제시할 입장은 못되며 향후 지방은행 육성차원에서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.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